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7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윤재옥ㆍ이인선ㆍ정희용

김기웅 • 최수진 • 김소희

이주영 · 김은혜 · 박성민

김상훈 · 이달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 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(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생 략) 대한 소득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 용근로자는 제외한다)로서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(이하 이 조에서 "세대주등"이라 한다)가 2025년 -----2028년 12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월 31일-----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청 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, 제 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 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 액만 해당한다)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과세기간 중에 주 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.

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(이하이 조에서 "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.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④ ~ ① (생 략)

③
<u>2028</u>
년 12월 31일
,
 1.·2. (현행과 같음)
4 ~ ① (현행과 같음)